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충남 지역 농촌 피해 현안 토론회

1부 피해 실태 증언과 현장발언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예당2일반산업단지 실태 증언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실태 증언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 실태 증언

논산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산업단지

2부 종합 토론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의 문제점, 피해, 대안

충남 내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 관련 피해 실태와 충남도에 대한 요구사항

<피해 실태 증언 1>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예당2일반산업단지 실태 증언

예당2산단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이근식

안녕하십니까?

예당2산업단지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이근식입니다.

우선 예당일반산업단지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조성사업이 끝나서 현재60%~70%정도 기업들이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입주한 업체들 80%정도가 화학제품 생산 공장과 폐밧데리로 납을 추출하는 공장 등 대부분 악취와 분진 등을 배출하는 공장들로서 인근 마을 주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3개부락(상장1리, 2리, 지곡리)주변에 공장 및 산단이 들어선 이후에 각종 암으로 사망 및 현재 암으로 고생하는 주민이 60여분이나 됩니다.

수차례 행정기관에 고발과 지자체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2021년에 4차례에 걸쳐 3개부락과 산단내 사업장주변에 대기질을 측정 한 결과 1급발암물질인 벤젠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여 높게 검출되었으며, 매년 분기별로 충남보건환경원에서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으나 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 정도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폐밧데리에서 납을 추출하는 회사인 삼지금속은 심한 악취와 분진으로 주민들이 민원이 잦아 지자체에서 TMS시설(실시간 환경대기질측정장치)을 가동한다고는 하는데 측정치를 공개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더 심한 악취와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 옆으로 지곡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산단이 들어서기 전에는 아주 맑은 물이 흘러 농업용수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 상류 쪽에 산단이 조성되는 바람에 중 하류쪽에서 논농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하류 쪽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전에는 침수피해가 전혀 없었는데, 산단 조성이후에 몇차례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작년 6월29일에도 갑자기 폭우에 농경지 상당수가 침수되어 일부 농민들께서는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현재 1산단으로인한 피해가 이렇게 막심한데 바로 옆으로 붙여서 지곡리와 상장1,2일 일부를 수용 계획으로 예당2산업단지조성산업을 승인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지자체나 시행업체에서는 좋은 공장만 유치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또한 산단 주변으로 개별공장들이 마구들어 서려고 하고 있고, 마을 한가운데에 20여 년째 가동되고 있는 신호인더스트리라는 회사도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악취와 분진 잦은 화재 등이 큰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예당2일반산업단지를 승인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예당2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당장 취소하고, 제1산업단지 내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약50여개소)의 시설물 점검, 사업장별 TMS시스템 도입, 처벌 강화 등을 통해서 주변마을 주민들과 사업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피해 실태 증언 2〉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실태 증언

장동진 조곡산단반대 대책위원장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109-8번지 일원에는 약 43만평 규모로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2021년 8월 SK와 함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11월 조곡산단 조성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고,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자원순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자원순환 시설이라고 하니 그런가보다 했지, 설마 이게 폐기물 처리장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자원순환시설이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신암면 주민들이 군청앞에 모였습니다. 날도 참 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곡 산업단지가 건설되고 그 안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면 미세먼지와 각종 공해로 마을이 황폐해진다고 반대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때 새로 뽑힌 지역구 군의원, 도의원, 최재구 군수님도 참여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군수님은 ‘주민 생존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생각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단지 건설 철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곡 1,2,3구 주민과 신암면의 여러 단체들은 9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예산군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한 지역구 의원은 경제과 감사 당시 ‘주민을 잘 설득할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일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 뜻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때 경제과에서는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지역주민 인센티브와 함께 예산군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 직영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왜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경제과에서 주민들에게 ‘어차피 산업단지는 진행될 거니까 주민에게 유리하게 협상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구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산업단지가 우리 마을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산업단지로 인해 평생을 피해를 보면서 사는 것보다 지금처럼 평화롭게 농사지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이 이상한게 산업단지 부지에서 50프로의 토지주 동의를 얻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곡산단 예정부지의 경우 해전대학교, 종중땅, 그리고 균유지 등 큰 토지 몇 개를 합치면 전체 토지의 50프로 동의를 받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피해보는 것은 인근마을 주민들인데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개발이 되는거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암에 들어와있는 기업들로 인해 환경피해를 견디며 사는 분들도 있고, 앞에 말씀하셨던 고덕의 예당산단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거라 생각했지만 산업단지 옆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산업단지와 인접한 작은 학교인 조림초등학교, 지금은 예산읍에서 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마 산업단지가 생겨서 가동하면 그 아이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이키우고 농사지으며 살려는 사람들은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도의원도, 군수도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장이 가동해서 땅이 황폐화되고 지하수와 하천이, 공기가 오염된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막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해 실태 증언 3〉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 실태 증언

천안 성남면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류형선

참고자료. 환경청 제출 의견서

탄원 및 의견서

수신 : 금강유역환경청장

발신 : 천안 성남면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제목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은 절대 불가하며, 결사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모든 책임은 협의기관이자 승인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게 있습니다!!

○ 현재 (주)넥서스에코텍이 추진하고 있는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유해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매립장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동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부적합 통보권한을 가진 승인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본 사안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승인기관으로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량권

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충분히 불승인(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위 판례에 따르면,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것이며, 업체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또한 위 판례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하여 심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은 기존의 산업단지와 인근의 오염시설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고 있는 생활환경상의 악영향에 더해서 지정폐기물매립장까지 들어설 경우에 주민들이 입을 총량적·누적적 악영향을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런데 기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인근 오염시설 등으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가동시 유해성물질 배출에 의한 누적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9쪽). 그런데 누적 환경영향을 고려한다면, 지정폐기물매립장은 결코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내용(2020. 10. 22)을 보더라도, “당초 조성부지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입주하고 있으며, 염화수소 등이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업폐기물매립장까지 들어설 경우에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인근에 중학교 1곳, 초등학교 3곳이 있으며, 반경 수킬로미터 내에 대학교를 포함한 각종 학교와 독립기념관을 포함한 다수의 역사·문화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은 학생들과 주민들,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확장공사를 할 경우에도 PM2.5, PM10 예측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확장공사와 함께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하 48미터까지 파고, 공사차량이 다수 통행할 경우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지하 50미터 가까이 파고 유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을 대량매립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21년 당진 현대제철 매립장 인근의 지하수에서 '시안'이라고 하는 유독물질이 검출된 것을 금강유역환경청도 잘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사고수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민가가 있고,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지하를 50미터가까이 파고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2. 관련 법령에 비추어 봐도 지정폐기물매립장은 절대 불가합니다!!

○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도 드러난 것처럼, 지정폐기물매립장 예정부지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천남중학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조 제7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코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설사 예정부지로부터 200미터를 약간 상회하는 거리를 이격한다고 해도,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해서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절대 불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기관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 또한 그동안 본 대책위원회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에어돔 방식으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중 '관리형 매립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기준에 따르면 “매립시설 상부는 시설물 등으로 덮는 형태로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매립시설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위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주변 환경 여건 등으로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제2호나목2)의 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2016. 8.)」에 따르면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의 예방과 내부 공기질 등을 감안하여 에어돔형 보다는 지붕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 1.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에서도 “악취 등의 영향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지붕형 매립장을 추가하여 검토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면, 수신면 주민들은 에어돔 방식에 대해 동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등 인근 주민들 또한 에어돔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라고 되어 있었으나, 성남면, 수신면 주민들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업체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업체는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회가 보낸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체협회는 성남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닙니다. 성남면, 수신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폐기물매립장 자체에 반대하고, 특히 붕괴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에어돔 방식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미 충북 제천 등지에서 붕괴하여 환경피해를 입힌 에어돔 방식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한 상황에서, 에어돔방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3. 그동안의 경과를 보더라도 지정폐기물매립장은 절대 불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이후에 업체가 어떻게 서류를 작성했는지는 모르나, 뿐만 아니라, 유해성이 강한 지정폐기물 매립용량조차도 밝히지 않고 공청회를 진행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것에 불과합니다.

○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2018.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통보한 심의결과를 전혀 따르

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협의 회에서는 지붕형 매립장도 대안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업자는 이를 누락하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매립용량 산정근거를 제시”하라고 심의결과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지역주민들이 에어돔 방식에 대해 전혀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5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의 공문을 초안에 넣으면서 마치 주민들이 에어돔 방식에 동의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기만적으로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업체의 신뢰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게다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는 주체인 (주)넥서스에코텍의 전신인 (주)케이티건설산업은 2020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을 정도로 부실한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공청회 당일 사업자측도 인정한 것처럼 (주)넥서스에코텍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설치·운영할만한 업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경우에도 2022년 12월 24일 ““민간업체가 아닌 국가, 지자체가 관리·운영을 위해 폐기물 관련 법안 개정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준비하고 환경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출처 : 충청신문(<http://www.dailycc.net>)).

따라서 신뢰성도 없는 업체가 추진하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은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은 절대 불가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특히 주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문 1〉

산업단지과 폐기물 매립장의 문제점, 피해, 대안

공익법률센터 농본 장정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1,274개의 산업단지가 존재한다. 지난달 홍성군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난 후 홍성군 곳곳엔 산단 유치라는 성과에 대한 칭송과 산단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기대에 찬 현수막이 휘날렸다. 산업단지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산업단지에 대한 기대는 실현되었을까

산업단지는 규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나뉘며 입주기업의 성격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일부 산업단지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이 단지화 효과를 기대하며 도시에다 신설되지만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읍과 면에 들어선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산업단지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홍보한다. 앞선 발표를 통해 산단의 효과가 존재하든 하지 않든, 주민들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추진된 산업단지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가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만큼 명확히 크고 모두에게 더 좋은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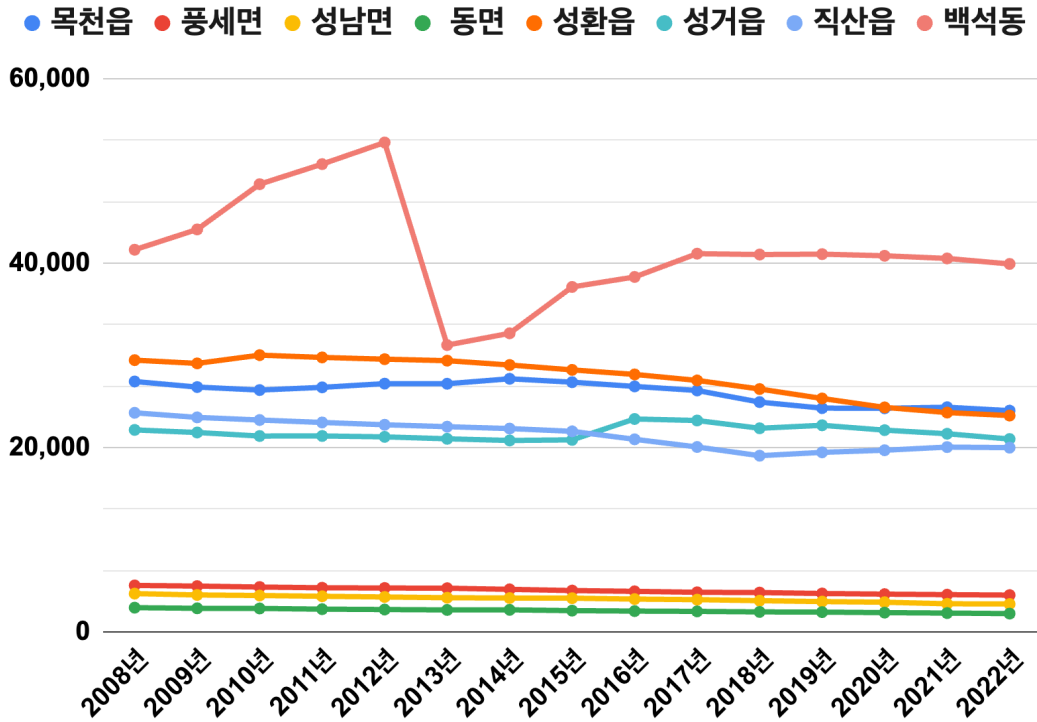
천안시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2만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그 사이 6개의 산업단지가 천안에 들어섰고, 4개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 중에 있다. 직산읍에만 3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나머지 7개 중 1개의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모두 읍과 면에 들어섰다.

천안은 수도권으로 편입되며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단지가 들어선 직산읍, 풍세면, 성환읍, 성남면, 성거읍, 동면은 인구가 줄어들었다. 산업단지는 지역을 개발시키는가. 아니다. 불당동과 부성동을 제외하고 산단이 들어선 모든 읍·면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구가 다가 아니다. 인구 뿐 아니라 산업체와 지역경제 전체를 봐야한다고 말이다. 천안 내의 사업체 중 산단 내에 있는 사업체는 과연 얼마나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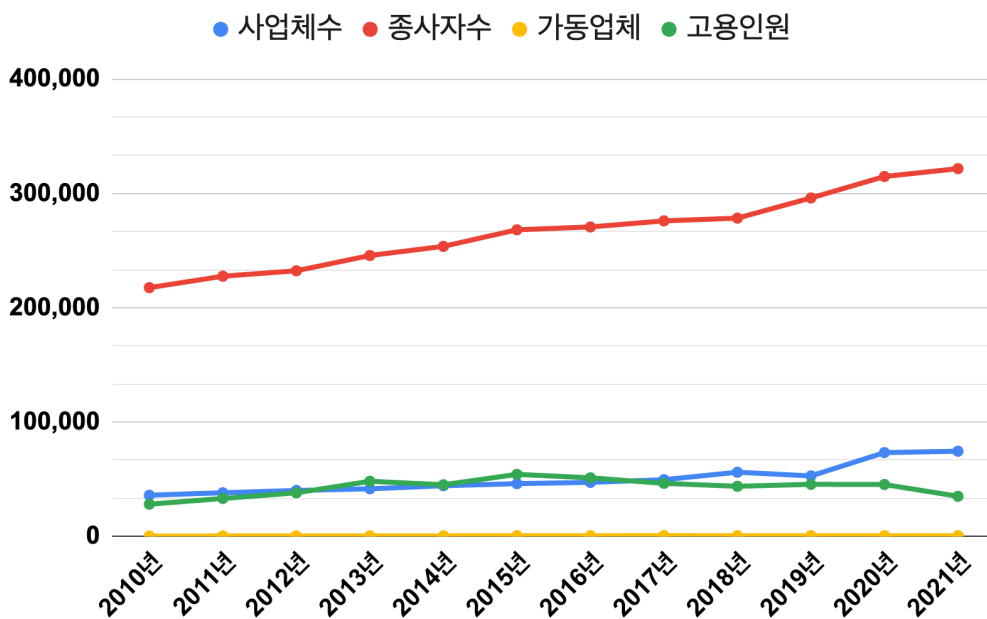
까. 2021년 기준 1퍼센트다. 지난 10년 동안 천안 사업체 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퍼센트를 넘어선 적이 없다. 고용인원은 이보다는 크지만 2021년 기준 전체 고용인원 중 11퍼센트에 그친다.

그림1. 천안시 산업단지 입지 지역 인구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년 12월 기준)

그림2. 천안시 전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산업단지 내 가동업체수와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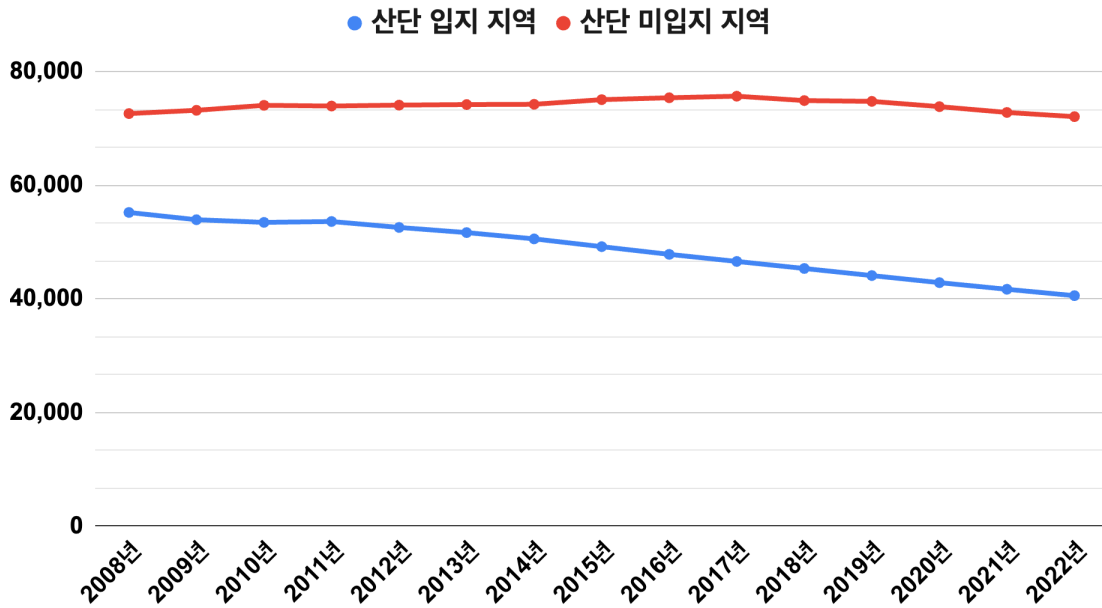


출처 : 천안통계연보,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2년 4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논산

논산은 어떠한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논산시의 인구가 15,180명이 줄어드는 동안, 산단 입지 에서 14,640명(감소 인구의 96%)이 줄어든 것은 우연일까?

그림3. 논산시 산업단지 입지 지역과 비입지 지역 인구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년 12월 기준)

같은 기간 연무, 가야곡, 성동, 강경, 노성, 연산, 은진에 들어선 7개의 산단은 지역인구감소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 또한 산단 가동률과 세수의 상관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산단이 늘어남에 따라 산단 내 입주 단체는 점차 늘어나고 고용인원도 증가했지만, 논산시의 관련 세수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논산의 경제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기준 1퍼센트, 고용인원 기준 7퍼센트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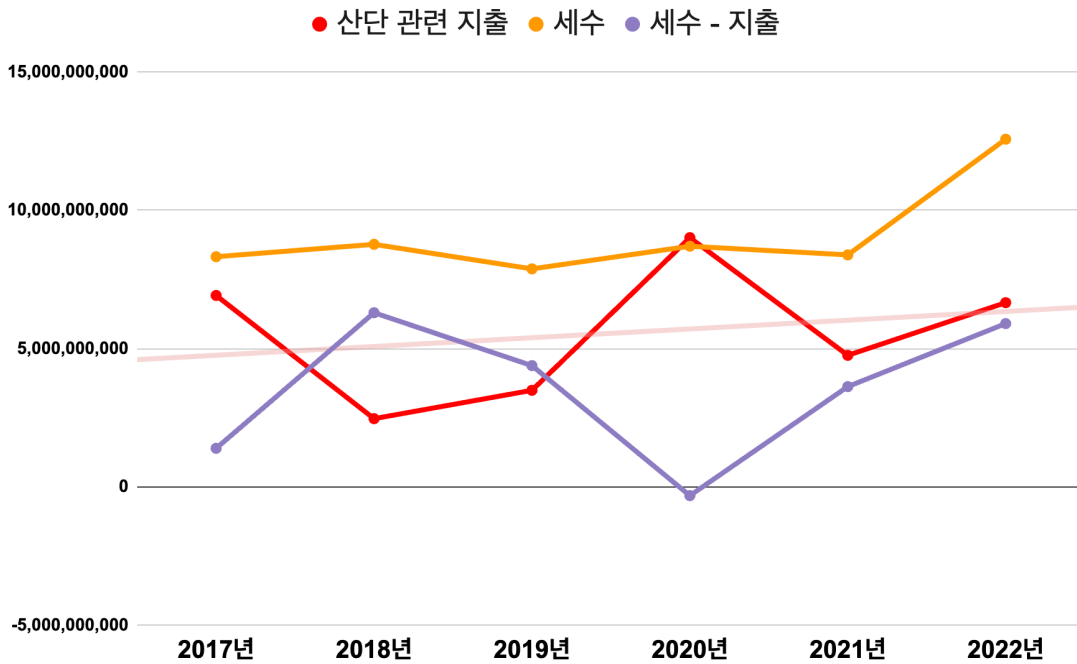
예산

예산 역시 인구추이를 보면 산단의 역효과가 명확히 드러난다. 예산군은 내포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앞세워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14년간 12퍼센트가량 인구가 감소했다.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삽교읍만이 인구가 증가했다. 삽교읍에는 2007년 준공된 삽교전문농공단지과 내포신도시가 있다. 인구 증가는 농공단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포신도시 덕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시가 내세우는 다른 이유, 세수 확보와 일자리에선 산업단지가 얼마만큼 영

향을 미쳤을까. 고용인원을 보면 전체 종사자 중 단 12퍼센트만이 산단 내 기업종사자였다. 세수는 어떨까. 2015년을 기점으로 세수와 산업단지 내 가동하는 회사가 함께 증가했지만,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는 산단 가동업체 수와 달리 세수는 정체되어 있다. 더군다나 지속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예산군이 지출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예산군은 산업단지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나아가 산업단지가 노후화될수록 그 관리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차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그림4. 예산군 사업체 관련 세수와 산업단지 관련 지출 추이



출처 : 예산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청구자료

표1. 예산군 연도별 산업단지 관련 지출

연도	지출
2013	84,387,990
2017	6,925,596,920
2018	2,471,824,280
2019	3,497,169,700
2020	9,014,114,278
2021	4,761,093,270
2022	6,664,806,220
2023	3,357,445,090
총계	36,776,437,748

출처 : 예산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산업단지로 인해 우리가 잃은 것

이상으로 논산, 예산, 천안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행정의 기대하는 일자리, 세수, 인구증가의 실태를 확인해보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산단이 들어선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세수 증가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며, 일자리 증가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 급부로 우리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농지와 농민

예산일반산업단지, 155. 예당일반산업단지 121.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115.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66. 앞의 숫자는 해당 산업단지로 인해 마을을 떠나야 했던 농민의 수를 뜻한다. 지난 20년간 충남에만 80여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그로 인해 2,392ha의 농지가 사라졌다.

표2. 충청남도 지자체별 산업단지로 인한 농지전용현황(2002~2022)

지역	전용농지(m2)	전용농지(ha)	해당 면적 재배 가능 농가호	해당 면적 재배 가능 농민
아산	6,060,735	606	404	867
예산	4,667,828	467	311	668
당진	3,957,420	396	264	566
천안	2,263,842	226	151	324
서천	2,156,133	216	144	308
논산	1,883,453	188	126	269
공주	1,303,639	130	87	187
보령	823,465	82	55	118
홍성	153,724	15	10	22
그외 지역	649,953	65	43	93
총계	23,920,192	2,392	1,595	3,422

출처 : 정보공개청구자료

폐기물매립장

더 큰 문제는 사라진 농지 위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이다.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개발로 그치지 않는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이 뒤따라 들어온다. 현재 폐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발생량은 ‘예상’발생량으로 2021년 산업단지별 폐기물 발생량 자료를 보면 폐기물매립시설 의무설치 산단 64곳 중 단 8개의 산업단지만이 예상발생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배출했다. 충남에는 의무설치 대상 산업단지가 9개가 있으나 1곳만이 실 발생량이 예상발생량을 초과했고,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을 넘는 산업단지 역시 현대제철 산업단지 한 군데뿐이었다. 이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을 위해 산업폐기물발생량을 과대 추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표3. 폐기물매립시설 의무설치 산업단지 지역별 현황

지역	산업단지 수	실발생량 ≥ 예상발생량	비율
강원	1	1	100%
경기	9	1	11%
경남	7	0	0%
경북	17	3	18%
대구	1	0	0%
부산	3	2	67%
울산	2	0	0%
전남	1	0	0%
전북	3	0	0%
충남	9	1	11%
충북	11	0	0%
총계	64	8	13%

출처 :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산단 설치현황, 환경부, 2022.

한편,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폐기물처리매립장과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은 산업단지 추진 시 승인받은 계획과 달리 폐기물 매립용량을 몇배 이상 늘리려고 하고(서산시 오토밸리 산업단지, 김제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늘리거나, 산업단지를 통째로 산업폐기물 처리단지로 변경하려는 시도(경남 사천시 대진일반산업단지)를 하고 있다. 또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사례처럼, 가까이에 학교들이 있고 주민들이 이미 산업단지로 인한 건강·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지하를 40미터 이상 파고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군 신암면 그린컴플렉스 사례처럼,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려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산업단지 밖 폐기물매립장이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데 비해,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인허가가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는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에코비트(태영그룹과 KKR이라는 사모펀드의 합작회사) 등의 대기업들이 산업폐기물사업에 뛰어들어, 전국 각지에서 기존의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등을 사들이거나 신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지역에 하나가 들어오면, 인근에 추가로 시설을 추진하거나 용량을 늘리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당진 현대제철 매립장), 에어돔 붕괴로 인한 오염(충북 제천시 왕암동 매립장 등), 유해물질로 배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경우 매립이 끝나면 법적으로 30년까지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업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이 완료된 산업폐기물매립장의 뒷처리를 맡게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인·허가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충북 충주에 있는 (주)에코비트그린충주는 2017년~2022년까지 1,65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중 973억원 이상이 당기순이익이었다(순이익률 58% 이상). 그리고 2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한 주주들은 배당금으로만 2022년까지 822억원을 챙겼다. 이처럼 이익은 민간기업들이 벌어들이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지역의 환경이 오염되며, 사후뒷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부정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농촌다움’의 상실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히 몇 명의 농민, 몇 평의 농지, 깨끗한 지하수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것이 ‘농촌다움’의 상실로 나타난다.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농민이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으로 연락이 와 주민들을 만나러 산업단지 반대 지역에 가보면 간혹가다 산업단지를 찬성한 주민

을 만나곤 한다. 작년 충북 진천에 갔을 때도 그런 농민을 만났었다. 반대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다 잠깐 쉬는 시간에 마을 안길을 걷다 만난 그 농민은 마당에서 깨를 씻고 있었다. 자신이 수확할 마지막 깨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는 조심스럽게 반대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왔다.

짧은 대화를 통해 그는 산단을 막아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몸이라면 하고 말을 마쳤다. 그가 산단에 찬성한 것은 더이상 다른 선택을 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농사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밖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고,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땅을 어떻게 이용하든 더 많은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농촌은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농민 그리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한다.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진 않더라도 친구에게, 자식에게, 후배에게 자신 있게 농촌이 좋으니 농촌에서 같이 살자고 말하기 어려워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폐지

이곳 흥성도 올해 들어 2개의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국가산업단지이고, 다른 하나는 흥성제2일반산업단지이다. 이런 산업단지를 추진할 때에 적용되는 법률로 2008년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무분별하게 산업단지가 추진됐고, 특히 지방일반산업단지가 그랬다.

지방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민간기업들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토지강제수용권까지 보장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인·허가 절차를 쉽게 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이 ‘여기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입지가 정해지고, 손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 추진절차를 대폭 압축했고, 인·허가 절차를 형식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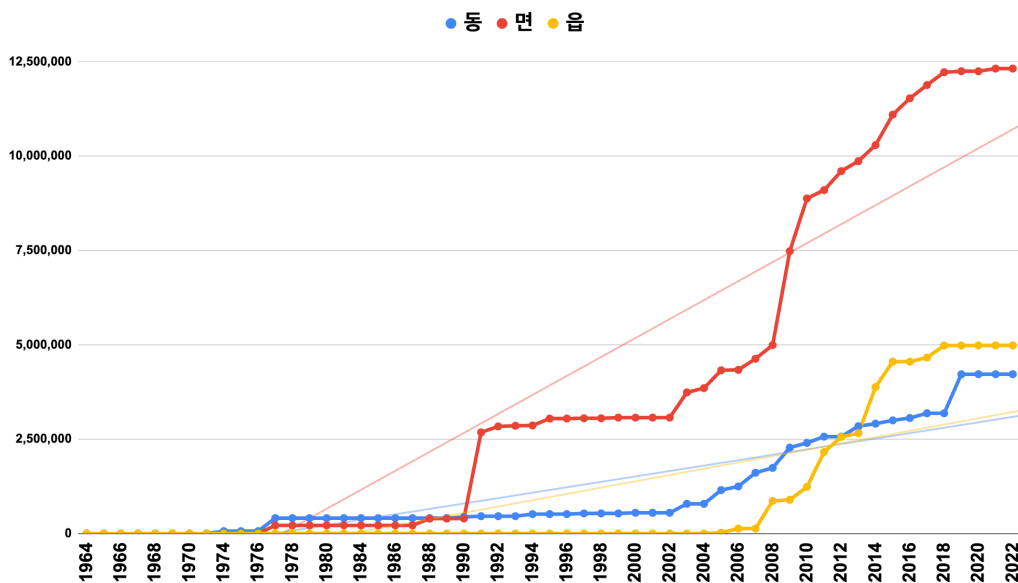
- ① 2단계 계획절차(개발 및 실시계획)를 1단계로 통합
- ②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
- ③ 주민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합하여 시행
- ④ 인·허가 관련분야 심의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로 통합

실제로 특례법이 발효된 2008년 이후로 산단 내 미분양면적과 분양미공고면적은 급증해 2022년 말일 기준 107,917,356㎡(미분양 면적 21,521,714㎡, 분양미공고면적 86,395,642㎡)으로 2023년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의 약 2배에 달한다.

따라서 지금은 무분별하게 추가 산업단지를 인·허가 해 줄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 활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지보전과 산업단지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산업단지와 함께 추진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 등을 생각하면, 민간기업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지방일반산업단지는 중단될 필요가 있다.

그 첫걸음은 무분별한 산업단지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법의 폐지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폐지되면, 산업단지를 추진할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게 된다.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업단지가 추진되게 된다. 이것은 무분별한 산업단지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림5. 연도별 읍면동별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누계



출처 : 산업단지입지정보시스템 통계(2022년 12월 기준)

2. 투명성의 확대

또한 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00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수는 166건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길이 없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간추린 회의결과만 공유해줄 뿐이며 그조차도 도청에 미리 약속을 잡고 들어가서 열람만 할 수 있다. 기록, 사진촬영 또한 불가능하다. 그 뿐 아니라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주체가 민간기업일 때 조차, 그래서 민간기업에게 땅을 수용할 권리를 줄 때조차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는 오로지 설명회 1회에 불과하다(특례법기준). 또한 설명회의 내용과 실제 나중에 추진되는 사업내용이 달라져서 주민이 뒤늦게 자신의 집 옆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표4.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08~2021)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08~2021)					
구분	상정안건수	심의 의결 내용			
		원안 의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합계	166	4	124	36	2
지정, 실시계획	55	-	40	14	1
산업단지계획	81	3	62	15	1
첨단산업단지계획	2	-	2	-	-
농공단지계획	28	1	20	7	-

출처 : 정보공개청구자료

이를 막기 위해 부산광역시처럼 공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속기록을 포함한 회의록을 시·도와 기초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한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니어야 한다.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사업이 추진되는 마을에서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후 중립적인 사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필수 절차로 넣어야한다.

3. 산업폐기물 국가책임제 등 산업폐기물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산업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폐기물은 민간기업들에게 맡겨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해 신규 산업폐기물매립장, 소각장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만 추진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공성이 담보되는 주체들만 신규 산업폐기물매립장, 소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간기업들이 이윤추구를 위해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매립장,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인·허가를 받은 매립장,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공공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공이 일정 비율을 담당하고 있어야, 민간 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지고, 더 이상 '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고, 사후 뒤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국 어디에서나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을 인·허가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폐기물도 권역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권역별로 공공성이 확보된 주체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산업폐기물 매립장 업체가 지나친 이익을 보고 있고,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통해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매립부담금으로 전환시키고 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소한 생활폐기물매립장, 소각장 이상으로 주민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사유지'이고 '민간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폐기물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주민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생활폐기물매립장, 소각장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감시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 사업장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8% 이상을 차지한다(2020년 기준으로 건설폐기물 44.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41.4%, 사업장지정폐기물 2.9%). 그렇다면 생활폐기물의

감량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도 국가가 산업폐기물 처리를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민간기업에게 수집·운반부터 최종처분까지 맡겨놓은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치며

농촌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적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들이대며 농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데 주민들은 좌절하고 있다. 올해도 107개의 산업단지가 새롭게 지정되었다. 왜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읍면에 들어서는가. 해당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가? 지역 소멸 위험지역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2008년 이후 산단이 추진된 지역 중 인구가 다시 증가한 읍·면은 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까.

지역'소멸'을 얘기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농촌을 존중하고 살리는 것이다. '지역/농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현재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그래서 중국에는 다시 농촌에 사는 이들이 긍지를 갖고 나는 '지역'에 산다, '농촌'에 살아서 좋다고 말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토론문 2〉

충남의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피해,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충남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충남, 산업단지에 대한 주민반대운동 현황

2022년 4분기 충남의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농공단지를 제외하고 국가산단 4, 도시첨단 3, 일반 65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중 뉴스 검색으로 확인한 결과 조성과정 또는 조성 후 주민갈등이 있는 곳이 24곳이다. 주민반대 이유도 여러 가지겠지만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문제, 입주기업 수용불가, 폐기물매립장 반대, 거주민 생업 위협 등의 이유이다.

토지수용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해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 그 외 토지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시행사에서는 손쉽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주민설득과정에서 약속했던 금액보다 저가로 토지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아산의 몇몇 산업단지에서는 저가로 토지를 수용한 후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로 정해진 곳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개발이익을 시행사가 가져가면서 갈등이 야기된 사례도 있다.

구미, 금산 등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불산을 취급하는 공장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낮아지면서 산단 조성 이후 기업 입주과정에서 주민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의 경우도 애초에 약속했던 업종과 다른 기업이 입주하면서 주민반대가 생기기도 했다. 산업단지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농업이나 어업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산업단지를 찬성하는 이유가 긍정적 영향을 보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팔고 마을을 떠나기 위한 경우도 있다. 산업단지가 주변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최근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인한 주민 반대가 두드러진다. 폐기물시설축진법 제5조에서 연간 폐기물 배출량 2만톤 이상이며, 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라 생각했던 주민들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해서는 반대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또 이미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동의도 없이 증설하여 운영하려다가 주민반대와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

충남,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주민 반대 운동 현황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은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고 그와 연결된 여러 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다. 고속도로를 타고 관광객이 몰려오리라 기대하지만, 관광객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몰려온다.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매립장 뿐만 아니라 농지, 임야 등에 불법 매립되거나 적치되는 사례도 많다.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주민 반대도 격렬하다.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함께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에서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얻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의 경우 최종처리인 매립, 소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때 폐기물 발생자가 처리시설과 가까울수록 그 필요를 더 느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은 감량화 없이 처리업자의 이익만 증가시키고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

해마다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늘고 있고,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2021년 기준). 하지만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폐기물시설축진법으로 일정 규모와 일정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확정도 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예상 업종 비율만으로 원단위 계산을 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폐기물발생량이 많은 도시지역만큼 농촌지역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보는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산업단지를 진행하면서 주민반대는 더 거세지고 있다. 앞서 소개된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흥성제2일반산업단지의 경우가 그렇다. 이미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도 증설 등에 대해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하면서 다시 갈등이 커지기도 한다.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것 외에 개별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고속도로 IC와 가까운 지역은 항상 폐기물매립장 입지에 노출되어 있다. 자연발생석면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을 진행해서 문제가 된 청양 사례도 있다. 또 충남은 아니지만 채석이 끝난 지역에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여 약한 또는 이미 갈라진 지반 사이로 침출수가 흘러 지하수 및 하천 오염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한번 매립이 진행되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곳에 사는 주민은 계속 악취, 침출수, 시설물 파손에 의한 환경피해를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법제도 안에서 주민은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그저 반대를 해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최선이다.

주민 반대 운동의 어려움

산업단지든,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든 주민 반대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에서 지정계획을 고시하기 전까지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알기 어렵다. 산업단지 승인 신청이 들어가고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도 주민 반대 운동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객관적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지정 및 비용지출이 모두 사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2022년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평가업체 대표들이 기소되는 사건도 있었다. 사업자에 의한, 사업자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는 없다.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었지만 그 절차를 제

때 알기 위해서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제출된 의견을 받아들여야하는 의무는 어디에도 없다.

환경피해를 호소하며 환경운동연합에 도움을 요청하는 마을에 가보면 공통점이 있다. 고령 인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요즘 농촌마을의 공통점이기도 한 고령화는 주민 반대 운동을 어렵게 하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행정을 압박하기 위해 반대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집회장소까지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시기별로 주민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너무 당연하다.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막기 위해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마을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도 많다. 사업부지 내의 토지 소유 여부, 마을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주민들의 입장 차이가 크게 다르다. 산업단지의 경우 그 영향에 대한 주민 간의 인식 정도도 차이가 있다. 이것을 사업자는 교묘히 이용하여 주민 간의 갈등으로 만들고 사업을 절차대로 진행한다. 토지보상가격이나 진행절차 등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개별 주민 접촉을 통해 주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대 운동을 하는 주민과 뜻을 같이하는 주체에 행정이나 정치인은 있을까?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산업단지의 경우 행정이나 정치인은 사업자와 더 가까운 것 같다. 조곡그린컴플렉스의 사례처럼 행정에서 주민에게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주민을 잘 설득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군의원도 있다. 특히 정치인은 선거철에는 뭐든 들어줄 것처럼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인구수가 적은 마을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 또 산업단지 유치만으로 정치인의 치적이 된지 오래이다.

산업단지든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든 그로 인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인근 마을의 주민이 아니다. 다행인건 예전보다 다양한 언론을 통해 피해사례들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주민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민반대운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주민은 소수이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에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충청남도에 바란다

앞서 장정우 활동가의 토론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산업단지는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시설이 되었다. 한편에서는 고속도로 인근 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되어 산업단지를 통해 관리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과정이나 조성 후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시도지사로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이 지속적인 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법이 정한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가 환경피해 등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산업단지 운영 이후까지 주민들에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가능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주민 참여와 정보공개, 환경협의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 산업단지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보기에 앞서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산업단지의 사업준공 후 입주율을 70% 달성한 다음해부터 3년간 또는 사업준공 후 7년이 되는 해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영향은 기업이 1개만 들어와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입주율 70%에 못미치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 1개라도 가동을 시작하면 그 1~2년 내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 민간업자의 이익은 50% 이상을 달성하는데, 환경에 의한 영향은 주변 주민들이 받고, 사후관리는 공공이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차피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거라면 공공에서 처음부터 산업폐기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공공에서 운영하되 발생지가깝게 지역제한을 두어 처리하도록 하고 감량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이끌어야 한다. 또

한 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지역에 증설을 거듭하기보다는, 공공처리 시설을 분산하여 설치하고 환경피해가 주변지역에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장 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민간업자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할 때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과 같은 제도를 현실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매립지 침출수 관리, 매립시설 제방 유지관리, 사후환경조사비용, 최종복토 비용 등에 대해 이행보증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매립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에어돔 붕괴, 침출수 누출로 인한 오염 확산 등 사고에 대한 비용 책정이 없다. 게다가 고시하고 있는 이행보증금마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축적된 폐기물 처리업자의 이익은 결국 환경피해로 인한 비용의 사유화일 수 밖에 없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산업단지도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모두 환경피해에 대해 객관적인 주민피해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은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마을기금 형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실질적 피해 보상이라 보기 어렵다. 환경피해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예상되는 또는 검증된 환경 피해 정도에 따라 의견수렴에 대한 무게도 달라야 한다.

충남은 산업단지도 많고 산업폐기물 발생량도 많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인 산업단지 건설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미 발전소, 제철, 석유화학단지와 여러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2위 수준이다. 하지만 충남의 탄소중립기본계획에도, 자원순환기본계획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폐기물 감축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업을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행정, 특히 약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주민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연대만이 답이다

오늘 앞서 발언하신 예당산단, 조곡산단, 천안제5산단, 논산산단 외에도 많은 지역에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크고 작은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지역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지역의 환경 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가 중요하다. 앞에

서 피해를 증언해주신 분들의 용기에 먼저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충남의 그리고 전국의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길 바란다. 더 이상의 피해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과 권력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연대만이 답이다. 당장의 이익이 아닌 모두를 위한 연대에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길 기대하고, 투쟁의 현장에서 그 연대가 더 공고해지길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1. 2022년 4분기 충남 산업단지 현황 (농공단지 제외)

- 총 72개 (국가산단 4 / 도시첨단 3 / 일반 65)

	산업단지명	유형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기간	지정년도	사업종료년도	주민반대현황
1	계룡제1산업단지[구:입암]	일반	충남	계룡시	두마면	2003~2011	1999	2011	
2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공주시	검상동	2012~2023	2014	2023	
3	쌍신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공주시	쌍신동	2018~2025	2018	2025	1)
4	유구자카드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공주시	유구읍	2008~2009	2008	2009	
5	탄천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공주시	탄천면	2006~2013	2007	2013	2)
6	금산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금산군	제원면	1992~2002	1992	2002	
7	논산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논산시	성동면	1996~2004	1997	2004	
8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국가	충남	서천군	마서면	2009~2025	2009	2025	3)
9	논산2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논산시	성동면	2007~2011	2008	2011	
10	동산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논산시	연무읍	2008~2014	2009	2014	
11	동현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공주시	동현동	2017~2023	2019	2023	
12	당진1철강산업단지	일반	충남	당진시	송악읍	2012~2022	2012	2022	
13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국가	충남	서산시	대산읍	1997~2006	1997	2006	
14	송산2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당진시	송산면	2008~2022	2009	2022	4

15	석문국가산업단지	국가	충남	당진시	석문면	1992~2015	1991	2015	5
16	부여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부여군	홍산면	2020~2025	2022	2025	6
17	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당진시	합덕읍	2010~2016	2011	2016	7
18	합덕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당진시	합덕읍	2006~2015	2006	2015	
19	서산남부일반산업단지 [구:서산도시형]	일반	충남	서산시	장동	2010~2021	2012	2021	
20	현대제철산업단지[구:송산]	일반	충남	당진시	송산면	2005~2022	2006	2022	
21	관창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보령시	주교면	1992~2024	1992	2024	
22	영보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보령시	오천면	2006~2023	2007	2023	8
23	웅천일반산업단지[구:선진]	일반	충남	보령시	웅천읍	2010~2022	2011	2022	
24	세종일반산업단지[구:가산]	일반	충남	공주시	의당면	2009~2016	2010	2016	9
25	대산3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서산시	대산읍	2013~2019	2014	2019	20
26	대산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서산시	대산읍	2006~2018	2006	2018	
27	대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서산시	대산읍	2009~2017	2011	2017	
28	대죽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서산시	대산읍	1991~2004	1991	2004	10
29	서산오토밸리일반산업단지[구:서산]	일반	충남	서산시	지곡면	1997~2013	1997	2013	11
30	서산인더스밸리[구:서산2]	일반	충남	서산시	성연면	2006~2012	2008	2012	
31	서산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서산시	성연면	2007~2014	2008	2014	12
32	예당2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예산군	고덕면	2019~2024	2022	2024	13
33	씨지앤대산전력일반산업단지[구:엠펙씨]	일반	충남	서산시	대산읍	2014~2021	2015	2021	
34	현대대죽2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서산시	대산읍	2020~2028	2022	2028	14
35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서산시	대산읍	2012~2023	2013	2023	15
36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예산군	오가면	2017~2024	2020	2024	

37	고정국가산업단지	국가	충남	보령시	주교면	1979~2023	1978	2023	
38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구:탕정컴플렉스]	일반	충남	아산시	탕정면	1995~2015	1995	2015	
39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구:탕정2]	일반	충남	아산시	탕정면	2004~2024	2004	2024	
40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구:음봉디지털]	일반	충남	아산시	음봉면	2012~2018	2013	2018	
41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아산시	음봉면	2015~2022	2017	2022	
42	아산제2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아산시	둔포면	2009~2015	2010	2015	
43	음봉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아산시	음봉면	2017~2024	2020	2024	
44	아산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아산시	둔포면	2004~2013	2006	2013	16
45	염치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아산시	염치읍	2018~2023	2018	2023	
46	운용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아산시	둔포면	2009~2012	2009	2012	
47	인주일반산업단지(3공구)	일반	충남	아산시	인주면	2017~2025	2019	2025	
48	인주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아산시	인주면	1993~2017	1993	2017	
49	탕정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아산시	탕정면	2014~2023	2016	2023	
50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아산시	탕정면	2013~2023	2015	2023	17
51	예산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예산군	응봉면	2008~2013	2008	2013	
52	예당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예산군	고덕면	2009~2022	2010	2022	18
53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예산군	고덕면	2009~2018	2011	2018	19
54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성환읍	2019~2024	2019	2024	*
55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직산읍	2019~2023	2020	2023	21
56	천안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동면	2013~2023	2015	2023	
57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성남면	2006~2023	2007	2023	22

58	성거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성거읍	2018~2022	2020	2022	23
59	천안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풍세면	2014~2022	2015	2022	
60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부성동	1992~2015	1993	2015	
61	풍세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풍세면	2005~2013	2008	2013	
62	천안제4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직산읍	2004~2008	2001	2008	
63	천안제6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풍세면	2019~2024	2021	2024	
64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	충남	천안시	직산읍	2020~2023	2020	2023	24
65	천안산업기술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직산읍	2000~2008	1999	2008	
66	천흥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성거읍	1991~1997	1991	1997	
67	천안마정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직산읍	1993~1996	1994	1996	
68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일반	충남	천안시	부성동	1989~1992	1990	1992	
69	풍세2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천안시	풍세면	2020~2024	2021	2024	
70	태안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	충남	태안군	태안읍	2011~2014	2011	2014	
71	홍성일반산업단지	일반	충남	홍성군	갈산면	2008~2014	2009	2014	
72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	충남	홍성군	홍북읍	2015~2022	2015	2022	

참고자료 2. 산업단지 반대에 대한 언론보도 현황 파악
- 72개 산단 중 24개 산단에서 갈등 발생

- 1) 쌍신산단 19) 예산신소재 20) 대산3 산단 : [충남 미분양 산단 '전국 최고' - 충청타임즈 \(cctimes.kr\)](http://cctimes.kr)
- 2) "공주 탄천산단 불산 사용기업 입주반대" 주민반발 - [뉴스1 \(news1.kr\)](http://news1.kr)
- 3) CTN -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넘비기업' 입주계약 말뼀 \(ctnews.kr\)](http://ctnews.kr)
- 4) 송산2일반산업단지 : [중도일보 - 송산2일반산업단지 주민설명회 무산 \(joongdo.co.kr\)](http://joongdo.co.kr)
- 5) CTN -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석문국가산업단지에 불산 공장 '절대 안 돼' \(ctnews.kr\)](http://ctnews.kr)
- 6) [암초 만난 부여군 일반산단 조성사업 순항할까 <공주·부여·청양 <충남디트 <기사본문 - 디트NEWS24 \(dtnews24.com\)](http://dtnews24.com)
- 7) 19) [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업단지: 산단조성 곳곳서 주민과 마찰 <사회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cctoday.co.kr\)](http://cctoday.co.kr)

- 8) 보령 영보일반산업단지 설명회, 주민 반대로 무산 <보령시 <충남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cctoday.co.kr)
- 9) 공주시 의당면 주민들 "가산산업단지 지정 즉각 취소하라"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 10) 서산주민 '어장파괴' 반발 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 난항 <서산시 <충남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cctoday.co.kr)
- 11)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 매립장 절대 반대 투쟁 본격화 <충남 <기사본문 - 뉴스세상 (newssesang.kr)
- 12) 서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주민 보상마찰, 항의농성 예고 (daum.net)
- 13)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 둘러싸고 주민들 간 갈등 <일반 <사회 <기사본문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jbnews.com)
- 14) 현대오일뱅크, 현대대죽2 일반산업단지 '주민설명회' 무산 <단독 <서산 <충남 <기사본문 - 충청일보 (ccdailynews.com)
- 15) CTN -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단독]서산시, 대죽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주민반발' (ctnews.kr)
- 16) 아산 둔포면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 충청타임즈 (cctimes.kr)
- 17)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주들 토지수용 및 민간아파트 3,500세대 분양 계획 특혜 법적 논란: (cailbo.com)
- 18) 예당일반산업단지 주변 마을 '벤젠' 기준치 초과 <환경·생태 <환경뉴스 <기사본문 - 환경일보 (hkbs.co.kr)
- 21) 중도일보 - 천안테크노파크산업단지 반대 현수막 3차례나 훼손...대책위 "범인 꼭 잡을 것" (joongdo.co.kr)
- 22) 천안 성남면 주민 "5산단내 지정폐기물 결사 반대" - 전국 >기사 - 더팩트 (tf.co.kr)
- 23) 천안 성거 일반산업단지 부지 편입 반대 시위 :: 공감연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 24) 중도일보 - 천안 직산읍 모시리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주들 토지 강제수용 반대 집회 열어 (joongdo.co.kr)
- *천안시의회,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동의처리' <정치 <뉴스 <기사본문 - 로컬투데이 (localtoday.co.kr)
- 산업단지 조성 전 주민반대 사례**
- 1) 금산제2일반산업단지 : 중도일보 - 금산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지있나 (joongdo.co.kr)
- 2) 논산태화산업단지 : "논산 태화산업단지 반대한다" (daum.net) - 2016
- 3) 논산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산업단지 : 살상무기업체 유치 논란 논산시장 "확산탄, 복핵보다 덜 위험"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 4) 케이밸리아산 산업단지 : 케이밸리아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 반발 <아산 <충남 <지역 <기사본문 - 대전일보 (daejonilbo.com)
- 5) 공주 송선일반산업단지 : [사진기사] 공주송선일반산업단지 반대 현수막 내걸려 - 백제뉴스 (ebaekje.co.kr)
- 6) 당진 합덕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 당진, 합덕 순성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 주민 반발 (daum.net)
- 7) 예산조곡그린컴플렉스 : "충남 조곡산업단지, 주민 생존권 침해하면서 건설할 생각없어"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참고자료 3. 충남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현황

- 1) [아산시 영인면, 폐기물 매립장 계획 '집단 반발' <천안·아산 <충남디트 <기사본문 - 디트NEWS24 \(dtnews24.com\)](#)
- 2) [충남 서산에 지하 40m·지상 5m 쓰레기 산이 생긴다? \(pressian.com\)](#)
- 3) ["천안시, 5산단 지정폐기물 설치계획 전면 재검토·허가 신청서 반려하라"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 4) [공주 의당·세종 장군면 주민들 "가산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결사반대" <충남 <행정 <기사본문 - 디트NEWS24 \(dtnews24.com\)](#)
- 5) [확장된 매립장에 커지는 주민 갈등 <핫이슈 <당진 <기사본문 - 충남인터넷뉴스 \(shanews.com\)](#)
- 6) [예산군, 대술면 꺾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최종 승소' <예산 <충남 <기사본문 - 에이티엔뉴스 \(atnnews.co.kr\)](#)
- 7) ["1급 발암물질 석면 나뒹굴고 있다" 청양 599명 '바환경' 허가취소 요구 : 전국일반 : 전국 : 뉴스 : 한겨레 \(hani.co.kr\)](#)
- 8) [고소·고발에 뿔난 주민들 201일째 500명 몰려나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 9) [예산 몽곡리 '폐기물매립장' 막았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 10) ["폐기물처리장 설치 신암조곡산단 반대" <지역 <기사본문 - 예산뉴스 무한정보 \(yesm.kr\)](#)